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기 관 의 장



제 693 호 2011. 6. 13(월)

## 조 례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595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596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5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597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598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599호[울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600호[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 18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60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자율방제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602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규 칙

-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361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 33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9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기간이”를 “남은 임기가”로, “모집한다.”를 “모집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산업무 담당으로”를 “예산업무 담당주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부담당으로”를 “주부담당주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부위원장”을 “보궐부위원장”으로 하며, “전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별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들”을 “별위에서 실제 비용을”로

한다.

제19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㉓ 구청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회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재정지원)** 구청장은 조정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 중 “회장”은 “회장, 부회장”으로 하고, “예산업무 담당으로”  
를 “예산업무 담당주사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회장, 보궐부회  
장,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및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연임 개정(제9조제3항)
  - 연임불가 > 1회 연임가능
- 나. 지역토론회 초청 토론회에 대한 수당과 조정회의 참석 민간위원 실비지급 근거 신설(제19조제3항, 제22조의2)
- 다. 누락된 내용 추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  
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96호

###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법대”(이하 “방법대”라 한다)란 각 농에서 방법의식이 투  
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  
는 미영리 목식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방법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법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  
이 방법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  
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법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농의 방법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비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성찬관서 인계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구성 등)** 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유행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보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류 및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인증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등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규모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법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법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법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법대 또는 방법대원이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대 등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법대 및 방법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법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법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8조(교육)** 구청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각 동 방법대 활동의 활성화 방안
2. 한동 캠페인, 한동 순찰 등 방법대의 각종 사업 지도 및 협력 등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법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나. 자원방범대의 임무, 조직구성 등(제3조~제4조)

다. 자원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지원, 지원중단 (제5조~제6조)

라. 포상, 교육, 지도 및 협력체제 구축 (제7조~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  
2항”으로, “1억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함. (제4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98호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소유권의 보류”을 “소유권의 보류 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유권의 이전 등기

-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5조제3호(동전의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지해율(利用地率), 지하 부분의 이용지해율 및 그 밖

의 이용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  
장이 산정된 해당 도시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신설. (제5조)

나. 구분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중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에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납세  
외무 발생임(등기임 포함)”을 “납세외무 징입임”로 하고, 같은 항이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서류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공무원간의 공동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 1건당 30만원

제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8조제3항 중 “「지명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은 “「지명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은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전국의 모든 제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지 징수촉탁협약에 따른 징수 촉탁업무 신설 및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신설·개정·삭제된 조문에 맞춰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 지급기준 중 납세의무 발생일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성립일로 통일(제3조제3항)
- 지급한도 중 공동지급기준 규정 명확화(제4조제1호)
-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규정 명확화(제3조제2항)

##### 나.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제8조제3항)

##### 다.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신설(제2조제4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6호)
- 세원을 제보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도복 규정 명확화(제3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1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선심에 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다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구보철포 및 준대구보철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자금·기술·판매·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북구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성과 관련하여 북구 유통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국공유농산물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동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농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농산업의 지역상생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동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농업 상생발전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동기업 및 중소유동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동기업 및 중소유동기업의 영업환경, 불공구미, 영업실태 및 지역채 능력 등에 관한 사항
3. 임대면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분류표준화·정브화 및 분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이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 제3장 유동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8조(설치) 구청장은 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공유농산물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농산물발전추진법령」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유농업상생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성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부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나. 제14조에 따른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제16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 라. 제17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의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위원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기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가. 법 제36조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나. 국공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 다. 국공 안에서 개선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울산광역시 구부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유통업부를 담당하는 국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제9조제1호에 관한 사항은 호선포 위원장이 관할한다.

④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제직기관으로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유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주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①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총석으로 개최하고, 총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신광역지 북부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유동임부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구모집포 또는 준대구모집포(이하 "대구모집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30명 이상의 원서로, 별 제8조의 대구모집포 등 개설자(별 제1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원 및 경위
  4. 상대방의 명업관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신청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정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이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을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조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한 사항

#### 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부군 유통산업의 전통적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민식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부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부군 유통산업 성장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부군 주민 및 소비자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6조(대규모집포 등의 등록)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년 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집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적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집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동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집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기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집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집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집포 등의 등록을 하거나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집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집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위원회가 형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형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동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집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특구 유동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등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전통시장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부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직·경영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내목·다목·라목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전통산업 보존구역의 범위·지정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중대규모·소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한 유통업분생조정위원회를 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 가.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제6조, 제7조)
- 나. 유통분생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분생신청 및 거부(제8조 ~ 제13조)
- 다.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절차(제14조)
- 라. 대규모·중대규모 및 소규모·중대규모 등록제한
  - 전통산업보존구역내 대규모·중대규모 등 등록절차제한(제16조)
  - 전통산업보존구역내 대규모·중대규모 등 등록시 조건 등 부과(제1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01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0  
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11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봉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서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제7항 중 “11월 말까지”를 “8월 말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단원의 회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탈퇴 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인명된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정비·보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단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 임기 개정 : 3년 → 2년 (제4조제5항)
- 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회의소집 인원 규정
  - 구성인원 11명이상 25명 이하 (제6조제2항)
  - 회의 소집 인원 3분의2 → 과반수 (제6조제4항)
- 다. 활동계획 제출 월 개정 : 11월 말까지 → 8월 말까지(제9조제7항)
- 라. 출입증 반납규정 신설 : 탈퇴 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0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을 “ 「지방자치법 “이라 하고 같은 조 중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을 “시행령”으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에 따라”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라 한다.

제2조의 세목“(회의총일수)”를 “(회의 총일수)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의 “회의총일수”를 “회의 총일수”로 한다.

제4조의 “영”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로, 같은 조 중 “각호”를 “각 호”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을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의 “11월 네 번째 월요일”을 “11월 20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외”를 삭제하고, 같은 항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견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은 심의·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회의운영에 반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련 조문개정

- 제1차 정례회 > **제2차 정례회**(제5조제2항)

나. 정례회 집회일 변경

- 제2차 정례회 11월 네번째 월요일 → **11월 20일**(제4조제2호)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3호 상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97조제3호 중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금액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인용 조문을 정비함. (제29조)
- 나.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함. (제96조 및 제97조)